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. 5. 11 선고 2023가단1014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5. 11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0. 2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19. 11. 11. 접수 제72769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정하경

별지